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삼성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삼성당신을위한삼성그룹밸류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당신을위한삼성그룹밸류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삼성당신을위한삼성그룹밸류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amsungfund.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09.04.28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0.1.27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5,000억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별도의 모집(매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마. 특수형태
3. 모집 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 나.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나. 종류형 구조
 - 다. 모자형 구조
 - 라. 전환형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 대상
 - 나. 투자 제한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나. 수익 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가. 매입

나. 환매

다. 전환

12.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나. 과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 재무정보

나. 대차대조표

다. 손익계산서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제4부 |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라. 운용자산 규모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제5부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총회
 - 나. 잔여재산분배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항
 - 라. 손해배상책임
 - 마. 재판관할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증권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 해지
 - 나. 임의 해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 보고서

나. 수시 공시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인 전용 집합투자기구로 개인이 아닌 자는 투자하실 수 없습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설명서 포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클래스)	펀드코드
삼성 당신을 위한 삼성그룹밸류인텍스증권자투자신탁 제1호 [주식]	92669
A	92670
C1	92671
C2	92672
C3	92673
C4	92674
Ce	92675
Cf	92676
Cw	92677
적립식	9443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능)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

마. 특수형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구조)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투자대상과 9.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5,000억좌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별도의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samsungfund.com)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특이사항 없음. 다만, 개인이 아닌 자 또는 삼성그룹에 속하는 기업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취득할 수 없음.
매출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클래스)	펀드코드
삼성 당신을 위한 삼성그룹밸류인텍스증권투자신탁 제1호 [주식]	92669
A	92670
C1	92671
C2	92672
C3	92673
C4	92674
Ce	92675
Cf	92676
Cw	92677
적립식	9443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해당 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삼성투자신탁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1 삼성생명 여의도빌딩 (대표전화 : 02-3774-7600, 콜센터 : 080-377-4777)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의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09.04.28 현재)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이천주	1971	운용역 (선임)	12개	5,182억	- 1995년 2월 포항공대 산업공학 학사 - 2002년 2월 한국과학기술원 금융공학 석사 - 1995년 1월 ~ 1999년 8월 대우중공업 - 1999년 8월 ~ 2002년 8월 현대증권 Analyst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인덱스운용1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주3)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해당사항 없음

주) 2009년4월28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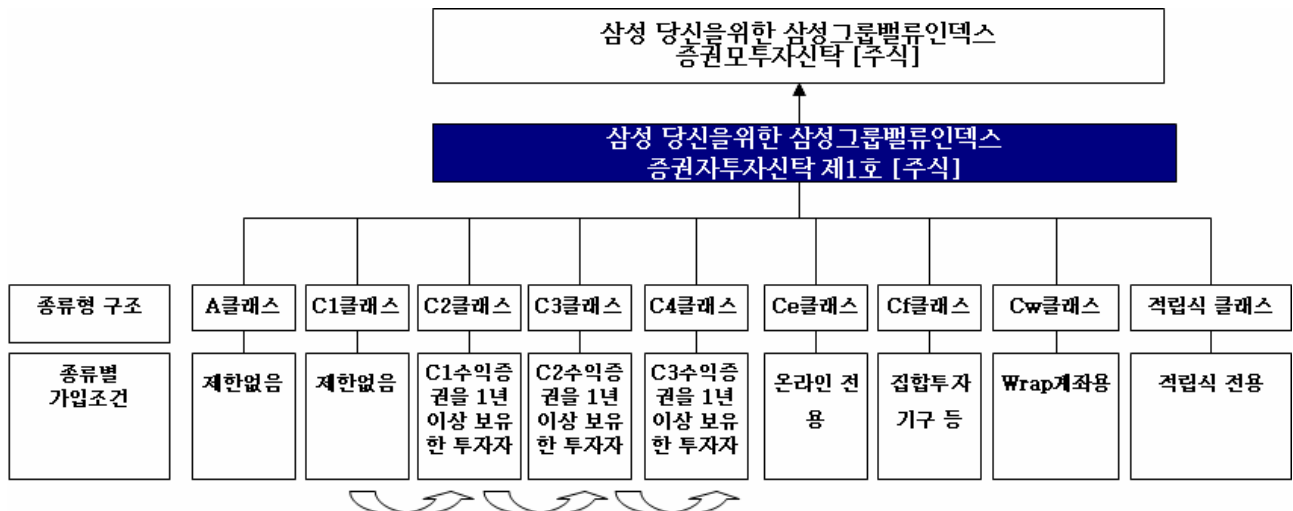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투자신탁(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

- (1) C1클래스를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 시마다 C2클래스 → C3클래스 → C4클래스로 자동 전환됩니다.(전환일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
- (2) C2, C3, C4클래스의 경우에는 최초가입이 불가능한 클래스로 투자자는 C1클래스로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다.
- (3)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수익증권 종류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수익증권을 전환 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C1클래스 가입자의 경우 전환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전환한 이후의 보유 클래스에서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전환한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클래스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클래스	최초 설정일	가입 자격
A	-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C1	-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2	-	C1클래스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가 전환되어 보유하는 수익증권
C3	-	C2클래스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가 전환되어 보유하는 수익증권
C4	-	C3클래스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가 전환되어 보유하는 수익증권
Ce	-	온라인(On-line) 판매전용 수익증권
Cf	-	특정금전신탁계약, 집합투자기구,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기관투자자,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200억 이상 매입한 법 제9조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
Cw	-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 전용 수익증권
적립식 ^{주)}		정기 또는 수시 적립식 전용 수익증권

주)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적립식 클래스가 존재하고 있으나, 다른 클래스에 적립식으로 가입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적립식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모든 클래스를 대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2)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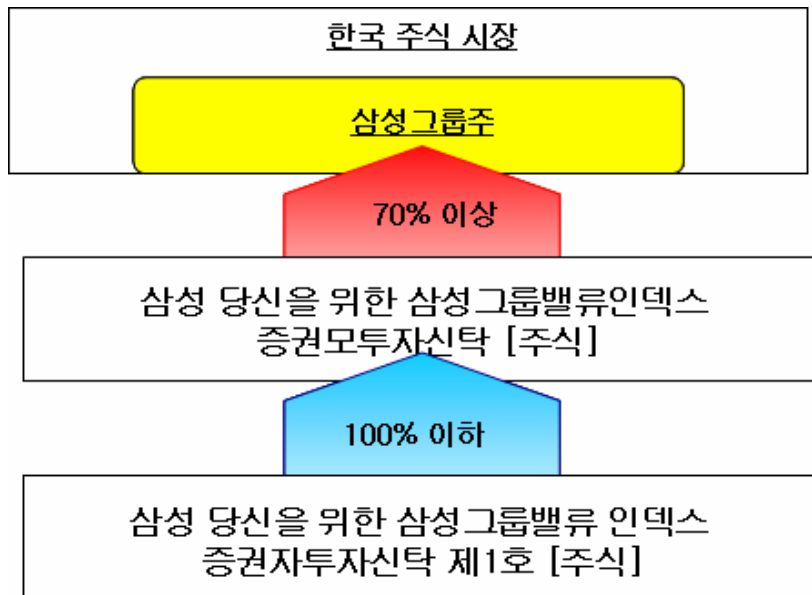
종류별	수수료			보수(연, %)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주)}	집합투자	판매	신탁	일반사무
A	납입금액의 1%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연0.55%	연0.7%	연0.03%	-
C1	-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연0.55%	연1.50%	연0.03%	-
C2	-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연0.55%	연1.35%	연0.03%	-

C3	-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 금의 30%	연0.55%	연1.22%	연0.03%	-
C4	-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 금의 30%	연0.55%	연1.09%	연0.03%	-
Ce	-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 금의 30%	연0.55%	연1.04%	연0.03%	-
Cf	-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 금의 30%	연0.55%	연0.06%	연0.03%	-
Cw	-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 금의 30%	연0.55%	연0%	연0.03%	-
적립식	-	-	180일미만: 이익금의 70%	연0.55%	연1.26%	연0.03%	-

주)상기 환매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서 제 54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가입한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부터 1 년이 경과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에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모자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또는 그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fund.com)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자형투자신탁의 구조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삼성 당신을 위한 삼성그룹밸류 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삼성 당신을 위한 삼성그룹밸류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 [주식]	-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삼성 당신을 위한 삼성그룹밸류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 [주식]	주요투자대상	주식 70%이상(단,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인 삼성그룹주 70%이상), 국내채권 30%이하, 집합투자증권등 30%이하
	투자목적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1)신탁재산의 70%이상을 국내 주식 중 삼성그룹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삼성그룹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2)비교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수연동형투자신탁입니다. (비교지수 : WISE 삼성그룹 밸류 인덱스 x 100%)

라.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 중 삼성그룹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투자시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지정하는 기업을 말하며, 이하 '삼성그룹주'라 한다)에 주로 투자하면서 'WISE 삼성그룹 밸류 인덱스'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수연동형투자신탁인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대부분의 투자신탁재산을 투자하는 증권자투자신탁[주식]으로서 모두자신탁과 동일한 투자목적을 추구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식 중 삼성그룹주에 주로 투자하는 '삼성 당신을 위한 삼성그룹밸류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투자하므로 모두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삼성그룹주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1)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내역
(1) 모두자신탁	100%이하	삼성 당신을 위한 삼성그룹밸류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 [주식]
(2) 단기대출 및 금융기	10%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 대기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 예치		운용 다만,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p>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 및 (2)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4) 및 5)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 및 (2)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p>나. 위의 (1)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함. 다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은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p> <p>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2)의 투자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2) 삼성 당신을 위한 삼성그룹밸류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 [주식]의 주요 투자대상

아래의 투자대상은 주된 투자대상을 기재한 것으로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fund.com)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내역
(1) 주식	70% 이상	<p>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 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p> <p>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인 삼성그룹에 속하는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함.</p>
(2) 채권	30% 이하	<p>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권 및 주택저당채권</p>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	자산유동화 증권	3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30% 이하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5)	집합투자증권 등	3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
(6)	장내과생상품	-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장내과생상품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과생상품의 경우 과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과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주2)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제한

아래의 투자제한은 투자제한 중 일부만 기재한 것으로 투자제한에 대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fund.com)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p>동일종목 투자</p>	<p>운용할 수 없음.</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p> <p>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간주</p>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파생결합증권(2011년 2월 3일까지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 가능),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매일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p>	<p>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p>
----------------	---	-----------------------

집합투자증권 등 투자(1)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기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투자자의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 등 투자(2)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매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동일 거래상대방	같은 거래상대방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계열회사 주식 투자 한도	-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할 수 있음. 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실권주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으로 실권주에 투자하는 행위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1) 이 투자신탁은 그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삼성그룹주에 주로 투자하면서 'WISE 삼성그룹 밸류 인덱스'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수연동형투자신탁인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투자자산의 가치 증대를 추구하는 것을 그 주된 투자전략으로 합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이 비교지수가 법시행령제86조제1항제1호나목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다.

* 비교 지수 = (WISE 삼성그룹 밸류 인덱스 x 95%) + (call 수익률 x 5%)

(3) 비교지수(WISE 삼성그룹 밸류 인덱스) 소개 및 선정사유

- 1) WISE 삼성그룹 밸류 인덱스는 와이즈에프엔주식회사가 삼성그룹계열사 종목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삼성그룹계열사의 가치를 시장 Data를 통하여 분석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매년 2회 이상 편입비중을 재조정합니다.
- 2) 이 투자신탁이 WISE 삼성그룹 밸류 인덱스를 비교지수로 선택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삼성그룹을 대상으로 한 지수 중에 유일하게 단순 시장가중이 아닌 기업가치에 기반하여 산출한 지수입니다.
 - ② 일반적으로 삼성그룹에 대하여 투자하는 방법은 동일가중이나 시가총액방식에 따라야 하나 투자대상이 18개('09. 5. 20일 기준)에 불과하므로 효과적인 투자대안이 되기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시장 Data에 기반하여 기업가치를 분석한 WISE 삼성그룹 밸류 인덱스가 합리적인 투자대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3) 이상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수산출기관인 와이즈에프엔주식회사의 판단에 따라서 지수 산출방법론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산출되는 지수의 성과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 4) 이 지수의 가격 및 산출방법론은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① 이 지수의 가격 및 가격 변화 추이는 와이즈에프엔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지수공개웹(www.wiseindex.com)화면에서 'WMI500'메뉴의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② 이 지수의 산출방법론은 와이즈에프엔주식회사의 지수공개웹(www.wiseindex.com) 화면에서 'WMI500개요'메뉴의 'WISE삼성그룹밸류인덱스'메뉴를 선택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③ 이 지수의 자세한 구성종목 및 종목구성 추이는 와이즈에프엔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지수 공개웹(www.wiseindex.com)화면에서 'WMI500데이터'메뉴의 'WISE삼성그룹밸류인덱스'메뉴를 선택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④ 그러나, 이상의 지수확인 방법은 작성시점('2009.3월)을 기준으로 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향후 관련 지수공개웹화면이 개편되거나 지수산출기관의 공개정책이 변화될 경우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5) 이 투자신탁이 (2)와 같이 비교지수로 선택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상기 2)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의 운용과 설정 및 환매에 따라 유동성 부족을 대비하기 위하여 10분의 5 내외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한 유동성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의 일부를 유동성으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상(2)와 같은 비교지수를 산정합니다.

(4)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운용 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에 대한 내용은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삼성 당신을 위한 삼성그룹밸류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① 신탁재산의 70%이상을 삼성그룹주에 투자하면서 'WISE 삼성그룹 밸류 인덱스'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② 주식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각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 등을 감안하여 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전략이 반드시 비교지수 수익률을 추종하거나 초과하는 수익률 달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펀드의 수익률은 주식 시장상황과 투자전략 실행의 결과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③ 비교지수 성과와의 추적오차율(Tracking Error)을 3개월 동안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④ 그러나, 이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적오차율(트래킹 에러: Tracking Error): 추적오차율은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이에 대응하는 비교지수 수익률에 비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집합투자기구의 기간수익률과 이에 대응하는 비교지수 수익률과의 차이에 대한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에 대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구성지수 종목의 가격급 변동, 설정 및 환매대금의 급변동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서 허용하고 있는 추적오차의 범위를 일부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 특이사항 없음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되는 어떠한 관련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

	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특정 주식 집중투자 위험	특정 산업 또는 그룹에 속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일반 주식형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벤치마크 수익률과의 괴리 가능성	시장 국면별로 벤치마크 수익률과의 수익률 괴리 폭이 확대될 수 있으며 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으로 인한 미체결, 당사 활용모델의 지수추적 괴리 및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지수를 추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의 경제, 금융 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비교대상지수가 시장전체를 추적하는 것이 아닌 특정 그룹에 속하는 기업의 지수 수준을 추적하기 때문에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삼성그룹주 및 국내 주식에 집중 투자하여 투자 수익 및 세제혜택 등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등급구분]

- 1등급 : 매우높은위험
- 2등급 : 높음위험
- 3등급 : 중간위험
- 4등급 : 낮은위험
- 5등급 : 매우낮은위험



<삼성 투자신탁운용(주)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위험자산 ^(주1) 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 ^(주1) 이 투자원금대비 -15%이상인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위험자산에의 최대편입비가 40%초과 ~ 60%미만인 집합투자기구 -주식시장전체를 추적대상으로 하는 인덱스운용전략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미만인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위험자산에의 최대편입비가 40%이하인 집합투자기구 -주식시장전체를 추적대상으로 하는 인덱스운용전략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주식등의 최대편입비가 60%이하인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하인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원금보존추구형) -A-이하 채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우량등급(A-이상)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 위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 (듀레이션 3년미만)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 위험자산 :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이하)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 글로벌 채권 등인 경우 글로벌 신용등급체계는 국내투기등급채권에 적용되는 국내 신용등급체계보다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신용등급 체계에서는 투기등급이지만 국내신용등급체계 및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투자등급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험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최대손실가능비율 :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가능비율. 다만 신용위험 및 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실제손실이 최대손실가능비율보다 클 수 있습니다.

2)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여부 및 투자국가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각 자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3) - 상세설명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동 기준에 준하여 별도로 분류합니다.
- 본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삼성투자신탁운용(주)의 자체기준으로 투자자의 위험성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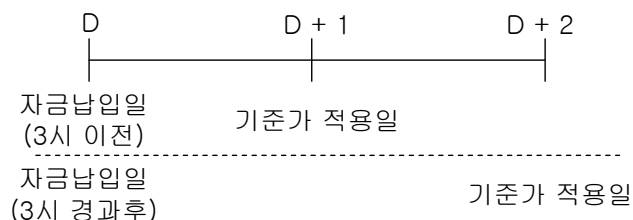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클래스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C1클래스 :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C2클래스 : C1클래스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가 전환되어 보유하는 수익증권
- C3클래스 : C2클래스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가 전환되어 보유하는 수익증권
- C4클래스 : C3클래스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가 전환되어 보유하는 수익증권
- Ce클래스 : 온라인(on-line) 판매 전용
- Cf클래스 : 특정금전신탁계약, 집합투자기구,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기관투자자,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200억 이상 매입한 법 제9조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
- Cw클래스 :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용
- 적립식클래스: 정기 또는 수시 적립식 전용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2)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3)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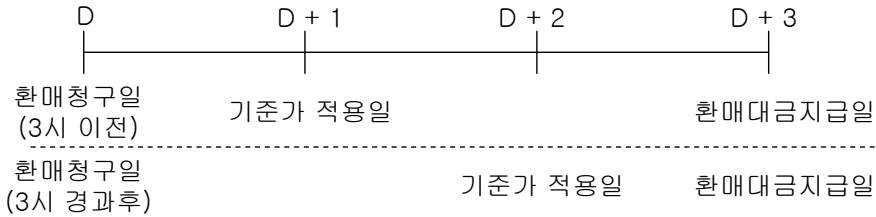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2)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 3)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환매수수료는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을 위한 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투자자의 환매금액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구 분	환매수수료	비교(지급시기)
A클래스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C1클래스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C2클래스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C3클래스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C4클래스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Ce클래스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Cf클래스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Cw클래스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적립식 클래스	18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주)상기 환매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가입한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에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 (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법 시행령제257조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1)내지2)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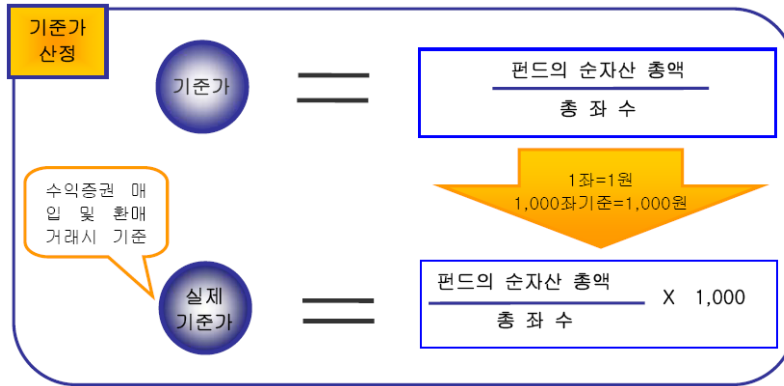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amsungfund.com)·판매회사·협회 (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일 10일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채무증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그 주식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시장의 최종시가로 평가
외화표시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알 수 있는 해외장외시장의 최근일 최종 거래 시가로 평가. 다만, 최근일 최종 거래 시가가 형성되지 않거나 최종거래시가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외화표시수익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외국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외화표시 수익증권은 그 외화표시 수익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최근일 최종시가로 평가
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으로 평가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1)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2) 업무 : 법 제238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적용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에 보고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주)}	전환 수수료
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1%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 이익금의 30%	-
C1	제한없음	-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C2	C1클래스를 1년 이상 보유한 자	-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C3	C2클래스를 1년 이상 보유한 자	-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C4	C3클래스를 1년 이상 보유한 자	-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Ce	온라인 판매 전용	-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 이익금의 30%	-
Cf	특정금전신탁계약, 집합투자기구, 보험 업법상의 특별계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기관투 자자,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200억 이 상 매입한 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 자자(법시행령 제10 조제3항제17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	-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Cw	Wrap계좌 전용	-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 이익금의 30%	-
적립식	정기 또는 수시 적립	-	-	180일미만: 이익금의 70%	-

	식 전용 수익증권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주1) 환매수수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으로 징구됩니다.

- 2) 상기 환매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가입한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에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이 투자신탁의 관련보수 등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비용	증권거래 비용
A	0.55%	0.7%	0.03%	-	실비	1.28%	실비
C1	0.55%	1.50%	0.03%	-	실비	2.08%	실비
C2	0.55%	1.35%	0.03%	-	실비	1.93%	실비
C3	0.55%	1.22%	0.03%	-	실비	1.80%	실비
C4	0.55%	1.09%	0.03%	-	실비	1.67%	실비
Ce	0.55%	1.04%	0.03%	-	실비	1.62%	실비
Cf	0.55%	0.06%	0.03%	-	실비	0.64%	실비
Cw	0.55%	0%	0.03%	-	실비	0.58%	실비
적립식	0.55%	1.26%	0.03%	-	실비	1.84%	실비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사유발생시

- 주1)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 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에는 이 투자신탁이 해당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원)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주1)}	클래스	126,720	399,485	700,208	1,593,871
		선취 판매수수료 : 1,000만원 x 1%= 100,000원			
	C1클래스 가입자로 자동 전환시 ^{주3)}	208,000	609,100	1,005,413	2,183,141
	Ce 클래스	162,000	510,705	895,152	2,037,619
	Cf 클래스	64,000	201,760	353,640	804,985
	Cw 클래스	58,000	182,845	320,487	729,518
	적립식 클래스	184,000	580,060	1,016,716	2,314,332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종류별로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1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C1클래스를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 시 C2클래스 → C3클래스 → C4클래스로 자동 전환 되므로 이상의 예시에서는 전환을 가정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참고로 C2, C3, C4클래스의 경우에는 최초가입이 불가능한 전환형 클래스로 투자자는 C1클래스로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다.

(2) 투자신탁 관련 비용

-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9) 법 제442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
-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모투자신탁(삼성 당신을 위한 삼성그룹밸류인텍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을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현황

- 해당사항 없음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금전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0'(零)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 합니다.
- (2) 수익자는 (1)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금전 등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3)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1)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2)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환급비율 : (사업연도 총소득-국내비과세소득)/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 > 1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3)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1)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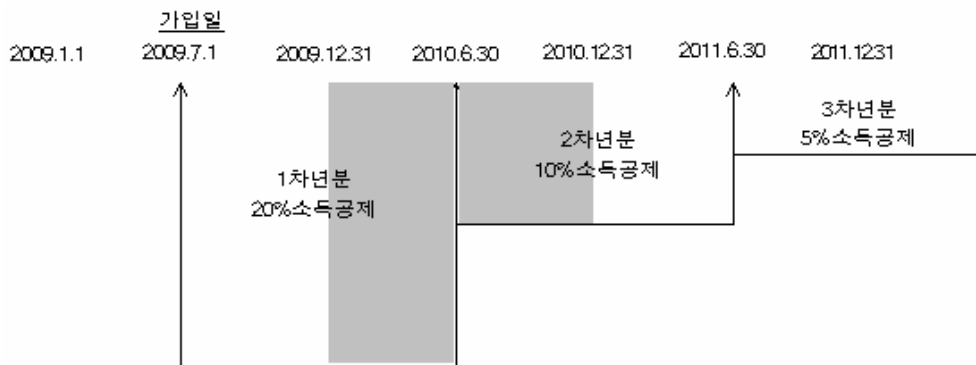
(4) 수익자에 대한 세제우대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 ①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 ②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 4) 소득공제 비율
 - ①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 ②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 ③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 5)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 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 ①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 ②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 ③ 2011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1.1.1~6.30까지의 불입액의 10% +
2011.7.1~12.31까지의 불입액의 5%



주1) 저축계약기간 및 투자자금 등의 유지 요건 :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세제혜택을 받는 저축의 원금이나 이익금 등의 인출이 없어야 합니다.

2) 상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세제우대는 이 자료 작성시점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향후 관련 세법 또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세제우대에 대한 설명은 향후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 해당 사항 없음

나. 대차대조표

- 해당 사항 없음

다. 손익계산서

- 해당 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해당 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 해당 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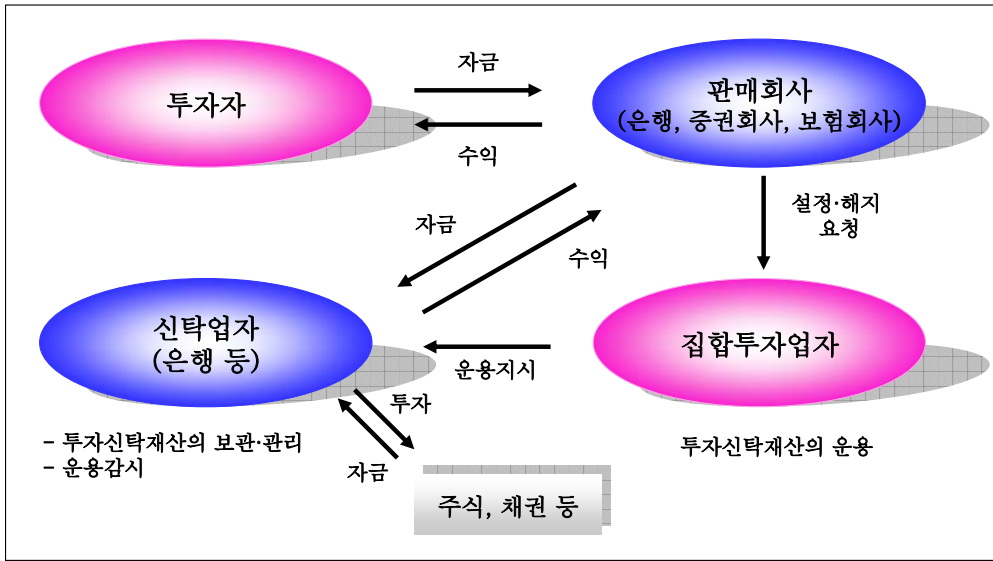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 해당 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 해당 사항 없음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1 (연락처 : 02-3774-7600, www.samsungfund.com)
회사 연혁	1998. 9 삼성생명투자신탁운용설립 (납입자본금 300억원)
	1999.12 舊 삼성투자신탁운용 흡수 합병(납입자본금 632억)
	2000.03 자본금 300억 유상증자 (납입자본금 932억)
	삼성생명투자신탁운용에서 삼성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1.01 업계 수탁고 1위 달성
	2001.04 수탁고 20조 달성
	2001.11 연기금 투자플 주간 운용사 선정
	2002.10 국내 최초 상장지수투자신탁 KODEX200 증권거래소 상장
	2003.10 관리자산 50조원
	2004.12 관리자산 60조원
	2005.04 ABF 펀드 설정(아시아채권펀드의 한국내 운용사로 선정)
	2005.11 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 재선정
	2008.03 관리자산 74조원
2008.04 홍콩 현지법인 영업인가	
2008.09 싱가포르 현지법인 영업인가	
2008.12 대한민국 증권대상 수상(서울경제신문 주최)	
자본금 ^{주)}	932억
주요주주현황 ^{주)}	삼성증권(65.3%), 삼성생명(5.5%), 삼성중공업(3.9%) 등

주) 산정 기준일은 2008.12.31일 입니다.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1)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2)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모두자신탁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모두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모두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08.3.31	'07.3.31	항 목	'08.3.31	'07.3.31
현금및예치금	164,275	123,364	영업수익	102,200	75,382
기타자산	59,991	56,200	영업비용	60,610	40,142
자산총계	224,266	179,564	영업이익	41,590	35,240
예수부채	45,136	15,999	영업외수익	882	1,786
기타부채	12,928	9,957	영업외비용	81	16
부채총계	58,064	25,956	법인세차감전계속	42,391	37,010
자본금	93,413	93,180	사업이익	-	-
잉여금	72,431	60,428	당기순이익	30,610	26,89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58	-			
자본총계	166,202	153,608			

라. 운용자산 규모(2009.01.31 현재 / 억원)

종 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 상품	특별 자산	재간접	실물 자산	총 계

수탁고	75,837	20,395	28,510	255,038	25,818	-	186,209	-	591.807
-----	--------	--------	--------	---------	--------	---	---------	---	---------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신탁업자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신탁업자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1588-1111)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www.hanabank.com) 참조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6)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7) 증권외 상환금의 수입
-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9)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1) 의무

-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

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KIS채권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번지 ☎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 02-3215-14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npricing.co.kr	www.bond.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2)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3)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

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은 없습니다.

-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제3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한 신탁업자의 변경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그 밖에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

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수익자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업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투자신탁의 등록 취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폐지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②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③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3)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④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투자운용인력의 변경/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⑦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amsungfund.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①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②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②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의 거래	- 평가 항목 중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장내파생상품 거래	-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또는 총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판매 및 관리 등 집합투자증권 매입, 환매 및 투자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성과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상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증권 (주식워런트)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외국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 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한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옵션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판매수수료	판매회사가 판매 또는 환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받거나 투자기간 동안 분할하여 투자자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 입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 등의 명칭으로 구분합니다.

